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51172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 2024. 9. 26.

판결 선고 2024. 11. 21.

주 문

-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1. 2.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0,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373767호로 "D은 원고에게 30,452,883원 및 그중 12,882,392원에 대하여 202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1. 2. 14.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F, D, G가 상속인이 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8. 7. 채권최고액 36,000,000원, 근저당권자 H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1. 7. 16.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원고의 2024. 3. 18. 기준 D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33,290,53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영통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 상태인 D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D의 상속분인 1/4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인바, 그 1/4 지분을 D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인 2021. 7.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목적물 중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분의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3,290,537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18,000,000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2,000,000원(= 118,000,000원 - 36,000,000원) 중 D의 상속분은 20,500,000원(= 82,000,000원 $\times$ 1/4)이므로, 위 20,500,00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 20,5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진영

별지